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28.

발의자 : 민병두 · 임종성 · 김민기

최재성 · 김경협 · 백혜련

유동수 · 김태년 · 송옥주

심기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.

그런데 최초 등록 당시 출가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당시 규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, '07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사망하여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2호 중 “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”을 “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(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 손자녀 1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보상금) ① (생 략)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(선순위자)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,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.	제12조(보상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 2. 1945년 8월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<u>자녀까지</u>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	2. ----- ----- ----- <u>자녀까지</u> 모두 사망한 경우(<u>생존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</u>) 손자녀 1명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